

주민번호 수집 금지 및 허용 사례

□ 기본원칙

- 개정 「개인정보보호법」에 따라 '14.8.7일부터 주민번호 수집 원칙 금지
 - ① 법령에 구체적 근거가 있는 경우*, ② 급박한 생명·신체·재산상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**, ③ 안행부령에 정하는 경우***에만 수집 가능
- * 법률, 시행령, 시행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요구·허용하는 경우(고시, 조례 등은 제외)
 ** 급박한 재해, 재난 상황에서 생명·신체·재산의 보호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필요한 경우
 ***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행부령으로 정하는 경우(현재 부령 개정안 검토 중)

□ 주요 사례

- 주민번호 수집이 계속 허용되는 경우(법령 근거가 있는 경우)

분야	주요 사례
세무	▶ 세금 부과 및 과세자료 수집·관리(국세기본법, 지방세기본법 등)
병역	▶ 병역자원 선발 및 관리(병역법, 군인사법, 군인복지법 등)
의료	▶ 환자진료, 약처방, 의료보험금 지급(의료법, 약사법, 국민건강보험법 등)
법무	▶ 국적부여 및 해외 출입국자 관리(국적법), 법 위반자 처벌(성폭력 특별법 등)
교육	▶ 대학생 학자금 지원 및 환수(취업 후 학자금 상환특별법 등)
금융	▶ 금융거래자 실명확인(금융실명법)
복지	▶ 공중위생 관리(공중위생법, 검역법), 취약계층 지원(노인복지법 등)
행정	▶ 인허가, 등록, 등 행정사무, 행정정보 공유(전자정부법), 공무원교육

-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되는 경우(불필요하거나 전화번호 등으로 대체 가능한 경우)

분야	주요 사례
회원관리	▶ 홈페이지 회원 가입, 도서·DVD 대여, 마일리지·포인트 카드 발급
본인확인	▶ 성명·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(I-PIN, 휴대전화 등으로 대체) ▶ 골프장, 호텔 등 숙박시설 등 시설물 이용·출입자 기록 ▶ 고객센터, A/S센터 단순 상담(단, 금융거래 업무는 제외)
기타	▶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근로자(채용 여부 확정시 주민번호 수집) ▶ 직장교육 및 협회·단체 교육, 아파트 주차증 발급 등 불필요한 경우

※ 고객관리프로그램 주민번호 미수집 전환

- ('13) PC방, 학원, 부동산중개, 렌트카, 출판 등 업종 (20개 프로그램 공급업체)
- ('14) 미용, 안경, 스포츠센터, 유통배달, 카센터 등 업종(60개 프로그램 공급업체)

□ 주민번호 수집 관련 분야별 주요 사례

< 주민번호 수집 가능 사례 >

①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

사례	▶ 신용거래, 보증, 용자시 등 거래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를 위해 주민번호 수집 필요
검토	▶ 수집 가능(※ 법령근거 : 신용정보보호법) - 본인의 동의를 받아 주민번호를 신용조회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중(8.7일 시행 예정)

② 휴대폰,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

사례	▶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, 요금 수납, 본인확인 업무 수행, 가입자 명의 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필요
검토	▶ 일부 가능(※ 법령근거 : 전기통신사업법, 정보통신망법) - 취약계층 요금감면, 온라인상 본인확인 업무, 대포폰 예방을 위한 가입자 명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업무는 주민번호 수집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(8.7일 시행 예정) - 다만, 통신서비스 가입자 관리, 요금 수납, 채권추심 등 법령상 구체적 근거가 없는 업무에는 주민번호 이용이 제한

③ 회사내 직원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 지급

사례	▶ 회사내 직원(정규직, 계약직, 임시직 등)들의 인사관리 및 급여지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
검토	▶ 가능(※ 법령근거 : 근로기준법, 고용보험법, 산재보험법 등) -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대장 작성, 4대보험 가입 등 각종 법령상 의무 수행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

④ 기부금 영수증 발급

사례	▶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출연받은 경우 기부금 영수증 또는 명세서 발급을 위하여 해당 후원자의 주민번호 수집
검토	▶ 가능(※ 법령근거 : 소득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) - 기부금 영수증 발급을 원하는 후원자의 경우 소득세법에서 정하는 영수증 발급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 ※ 영수증 발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- 또한, 50만원 이상 출연자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 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

⑤ 수도, 통신, 난방 요금 등 취약계층 대상 요금 감면

사례	▶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 감면을 위해 감면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
검토	▶ 가능(※ 법령근거 : 전기통신사업법, 수도법, 집단에너지사업법 등) - 취약계층 요금감면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 중(8.7일 시행 예정)

⑥ 부동산 계약시

사례	▶ 부동산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,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
검토	▶ 가능(※ 법령근거 :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 제공에 관한 규칙,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등) - 임대차 계약시 확정일자 신고, 부동산 거래 신고 등을 위해 계약 상대방의 주민번호 수집 가능

< 주민번호 수집 불가능 사례 >

① 마트, 백화점 등 멤버십 회원 가입(포인트, 마일리지 등)

사례	▶ 다수 제휴사와 회원별 구매실적 공유 및 포인트 관리, 회원카드 미소지자 본인확인 등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
검토	▶ 불가능 : 법령근거 없음, 대체 가능 -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요구 허용하는 경우로 보기 어렵고, 주민번호의 다른 대체수단* 도입이 가능한 경우임 * 회원번호, 전화번호, 성명+생년월일, 마이핀 등

② 거래처 사무실 등 건물 출입

사례	▶ 임시방문자에 대한 보안유지, 출입증 발급 등을 위해 방문자의 주민번호 수집하여 관리
검토	▶ 불가능 : 법령근거 없음, 불필요 - 임시방문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보안유지, 시설물 보호 등을 위해 일정부분 필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, 주민번호 까지 수집해야 할 불가피성 인정 곤란(법령근거 미흡) - 필요시 방문자 성명, 출입목적,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에 한하여 수집하고 주민번호는 수집하지 않아야 함

③ 입사지원 등 채용절차

사례	▶ 신입사원 공개 채용시험에 응시한 구직자의 주민번호를 시험응시자 관리를 위해 수집
검토	▶ 불가능 : 법령근거 없음, 불필요 - 입사지원 단계에 있는 구직자는 근로계약 체결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주민번호 수집 필요성 낮음 - 응시단계에서는 생년월일이나 전화번호 등으로 대체하고 채용 여부가 확정된 후에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음

④ 콜센터 상담시 본인 확인

사례	▶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콜센터에서 반품요청자 등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
검토	<p>▶ 불가능 : 법령근거 없음, 불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쇼핑몰 콜센터 등은 고객의 성명, 생년월일, 전화번호, 주소, 최근거래 기록 등 다양한 정보를 통해 본인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으므로 주민번호 수집 불필요 - 단, 금융기관(금융실명법), 세무서(국세기본법) 등 법령상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된 기관의 콜센터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번호 수집 가능

⑤ 요금 자동이체 신청

사례	▶ 매월 요금이 정산되는 계약 체결시(신문, 할부 등) 금융 기관에 자동이체 신청을 위해 계약자의 주민번호 수집
검토	<p>▶ 불가능 : 향후 불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그간 자동이체시 주민번호를 사용하였으나, 8월 초부터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계좌번호나 카드번호를 사용할 예정 이므로 앞으로는 자동이체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필요 하지 않음 <p>※ 금융결제원은 자동이체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도록 개선</p>

⑥ 렌터카 이용자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범칙금 통고

사례	▶ 렌터카 이용 고객이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해당 렌터카 업체가 고객의 주민번호를 관련 행정청에 제출하기 위해 주민번호 수집(미제출시 렌터카 업체에 범칙금 부과)
검토	<p>▶ 불가능 : 대체 가능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고객 중 일부가 교통법규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고객의 주민번호를 미리 수집하는 것은 과도함 - 렌터카 업체에 고객이 부담해야 할 범칙금이 부과된 경우 고객의 성명과 운전면허번호를 관련 행정청에 제출하면 해당 행정청이 범칙금 부과 대상자를 확인하여 조치 가능